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고졸 우수인재 채용 확대,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21. 6. 8.)에 따른 후속 입법 추진
-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시 공고 생략 등 기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 인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졸 우수인재 채용 확대(안 제21조의2)

- 1) 9급 공채 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22년~)되면서 고졸 출신의 공직 진입 제약이 우려되어 해소할 필요
- 2) 고졸 인재 채용분야를 기술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고, 필기시험 의무화 등 절차 마련

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절차 규정(안 제38조의18)

- 1)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
- 2) 공무상 질병휴직 휴직연장시 공무상 요양승인(또는 요양급여 결정) 받아야 하고, 휴직기간 3년 초과후 연장시에는 전문가 자문 절차 필수

다. 채용 비위 관련 합격·임용 취소(안 제65조의2)

- 1)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합격·임용된 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 부재

- 2) 공직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채용 비위 관련 합격자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기준·절차 마련

라. 겸임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의5)

- 1) 겸임가능 직종을 일반직에 특정직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 전체로 확대
- 2)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수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확대, 겸임 가능한 유관기관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추가 등

마. 가족돌봄휴직 요건 확대(안 제38조의19)

- 1)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조문명칭 변경하고, 가족의 “간호”에서 “부양과 돌봄”으로 요건 확대

바. 중증 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시 공고 생략(안 제21조의3)

- 1)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공고 생략할 수 있게 하고
- 2) 근무기간을 지방의회의원 임기 범위 내로 제한

사.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산정시 병역기간 명확화(안 제12조의2)

- 1) 법 제36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그 등재일로부터 그 병역에 따른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

아. 기타 미비사항(안 제8조의2, 제17조, 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3. ~ 10.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채용 비위 관련 합격·임용 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겸임”을 “겸임(제4호에 따른 겸임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을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을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다른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경력직공무원”으로, 같은 호 중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지방공단”을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직공무원과”를 “경력직공무원과”로, “일반직공무원 간”을 “경력직공무원 간”으로 한다.

4.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제8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

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그 등재일로부터 그 병역에 따른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을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을 “학교(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에 해당하여야 한다)의 졸업자(졸업일)”로, “기간 이내인”을 “범위에 있는”으로,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사람 중 해당”을 “해당”으로, “거쳐”를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기능 분야”를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를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로, “기술·기능 분야”를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을 “임용권자는”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증장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제21조의4제1항 본문 중 “근무기간은”을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보조를 하기 위하여 임용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 당시 활동 보조한 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0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의18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에 대해 같은 사유의 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의18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을 “휴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된 이후에는 같은 사유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명할 수 없다.

제38조의18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을 “질병휴직을 한 경우(질병휴직이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의19의 제목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간호할”을 “돌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간호할”을 “돌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3조의3제1항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채용 비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시험실시기관이 인사위원회인 경우, 요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격취소등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합격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인사위원회는 법 제43조의3제1항의 유죄판결과 당사자의 합격 또는 임용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합격취소등을 의결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경우,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명 없이 심의·의결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의 의견 제시와 증거물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인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의결 결과를 즉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합격취소등 의결 결과를 통지 받은 즉시 그 합격을 취소하고, 당사자와 임용권자(당사자가 제13조에 따라 임용추천되었거나 이미 임용된 경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임용권자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합격취소 등을 통지받은 경우, 즉시 그 임용을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취소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중, 간호조무직렬은 간호직렬 아래에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취소등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u>겸임</u> 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u>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u>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u>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u>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비슷한 <u>일반직공무원</u>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내용이 비슷한 다른 <u>일반직공무원</u> 간	제7조의5(겸임)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u> ② ----- <u>겸임(제4호에 따른 겸임을 제외한다.)</u> ----- ----- -----. ----- <u>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u> --- ----- ----- <u>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u> ----- -----. 1. ----- ----- ----- <u>다른 경력직공무원</u> ----- ----- 2. ----- ----- <u>경력직공무원</u> <u>원</u> -----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③·④ (생략)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3. 경력직공무원-----

-----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4. 경력직공무원과 -----

----- 경력직공무원 간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단서 신설>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생략)

<신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그 등재일로부터 그 병역에 따른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7. (생략)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9. ~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21조의2(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5조의4제1
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

1. ~ 7. (현행과 같음)

[illegible]

9.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

----- 학교(교육부장관 또

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
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
로서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사람 중 해당 학교의 장
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 또
는 시·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
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
로 하여 선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시·도
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
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
다)

2.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의 학교(시·도지사 또는 시
·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기술
·기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
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
교에 해당하여야 한다)의 졸업
자(졸업일-- 범위에 있는 ----

--- 해당 -----

----- 받은 사람 중에서 필
기시험 등을 거쳐 -----

-----).

1. -----

---- 분야-----

--

2. -----

--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
치된 학교----- 분야

② -----

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⑪ (생략)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⑤ ~ ⑦ (생략)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

---. --- 임용권자는 -----

-----.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중증장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단서 삭제>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보조를 하기 위하여 임용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 당시 활동 보조한 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0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신 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에 대해 같은 사유의 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② 법 제64조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원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64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
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
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

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
휴직-----

 ----- . 다만, 공
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
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
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
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된
이후에는 같은 사유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명할 수 없다.

④ _____

 _____ 질병
 휴직을 한 경우(질병휴직이 중

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19(가사휴직) 법 제63조 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⑤ ----- 제4항-----

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 -----

1. ----- 돌보는 -----

----- 돌볼 -----

2. ----- 돌보는 -----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 돌볼 -----
-----.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3조의3제1
항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
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
용권자는 제1항의 채용 비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는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의 취
소 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시험실시기관이 인사위원회
인 경우, 요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
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인사위

원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격취소
등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합격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인사위원회는 법 제43조의3
제1항의 유죄판결과 당사자의
합격 또는 임용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
우, 그 합격취소등을 의결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경우, 당사자가 제3
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도 소명 없이 심의·
의결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관
계기관 또는 관계인의 의견 제
시와 증거물의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인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의결 결과를 즉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합격취소등 의결 결과를 통지받은 즉시 그 합격을 취소하고, 당사자와 임용권자(당사자가 제13조에 따라 임용추천되었거나 이미 임용된 경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임용권자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합격취소등을 통지받은 경우, 즉시 그 임용을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취소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